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목욕)

제1조 (방문목욕 서비스 이용 대상자)

-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 1급~4급까지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 ② 2008년도는 장기요양 등급판정과 관계없이 기존 대상자를 유지하며, 2009년 1월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1급~4급 까지 판정 받은 자로 한다.

제2조 (이용자 모집방법)

- ① 방문목욕대상자의 모집을 위해 현수막 등의 광고물, 매스미디어를 통한 오프라인 방식과, 기관 홈페이지 SNS등을 이용한 온라인 방식을 이용하여 흥은종합사회복지관 내 목욕 차량을 이용한 방문목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알린다.
- ② 이용 인원.
 1. 방문목욕서비스의 정원은 상한선을 두지 않는다.
 2. 방문목욕서비스 인원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하다.

제3조 (방문목욕 이용 계약 등)

- ① 계약 기간
 - 1 목욕 담당자인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이하 ‘목욕담당자’ 칭함)는 목욕 서비스 이용자 및 그 보호자 또는 신원인수인(이하 ‘이용자’ 라 칭함)이 제시한 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 계획서를 확인하여 등급에 관한 적법여부를 확인 하여 방문 목욕 실시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2. 방문목욕서비스를 원하는 이용자에게 목욕담당자는 계약서에 적시 되어 있는 중요사항을 이용자에게 재확인 시켜 준 후 양 당사자는 의견에 합치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서에 날인 또는 서명으로 계약은 성립한다.
 3. 방문목욕서비스 계약기간은 매년 말일까지로 하되 상호 계약 해지 사유가 없는 한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까지 묵시적 갱신 된다
다만, 장기요양등급에 갱신 내지 변경 되었을 때는 위 1호에 의거한다.
- ② 계약목적
방문목욕 서비스 계약은 표준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및 이용자 욕구에 의거 방문목욕서비스의 실시

목적으로만 계약을 한다.

제4조(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변경)

①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1회 방문목욕에 제20조의 급여제공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 (원)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8,990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80,230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50,100

②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의 구입비용을 포함하며, 이를 별도로 수급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해 서비스를 받는 자는 본인부담금 15%(경감대상자 경우 7.5%,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0%)를 목욕 서비스 종결 후 담당자에 현금 납부 또는 무통장 입금을 방문목욕 서비스 종료 익일까지 입금한다.
2. 목욕 수가 변동에 따른 본인 부담률이 변경(유료에서 무료 또는 감경)이 있을 경우 공식적인 서류(표준장기이용인정서등)에 근거하여 지체 없이 목욕 담당자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목욕 담당자는 본인부담액 변경된 금액만 지급 받아야 하며, 초과 수령액은 지체 없이 이용자등에 반납 하여야 한다.
3. 이 항에서 적시한 방법을 제외하고는 이용자에게 일체의 비용을 청구 할 수 없다.

제5조(방문목욕 급여비용 산정방법)

- ①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의 각 분류에 따른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 ② 전조 따라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 ③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1. 목욕 서비스 이용자 및 그 보호자 또는 신원인수인(이하 ‘이용자 등’이라 칭함)은 목욕 전 차량에 상태 및 목욕에 적절한 상태를 요구 할 수 있으며, 개인 목욕용품을 지참하여 목욕 서

비스를 요청 하는 경우 목욕 담당자는 이를 거절 할 수 없으며, 이용자 등이 목욕에 관한 질문 시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개선사항을 요구 할 수 있다.

2. 이용자 등은 목욕 전 상태에서 이용자를 목욕 담당자에게 인계하고, 목욕 종료 후 목욕 담당자는 이용자 등에게 이용자를 인계 하여야 한다.

이용자등은 목욕 후 지체 없이 이용자에 신체적 이상 징후에 관하여 목욕 담당자에게 질문하고, 설명을 요구 할 수 있다.

3. 목욕담당자는 이용자를 인계, 목욕종료 후, 이용자를 인수하기 전 까지 사고에 관하여, 고의·과실여부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7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 ⑤ 계약해제 및 해지 요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등 및 목욕 담당자는 각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 한 후 계약을 해지로 간주 한다.

1.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대한 정보를 고의 또는 과실로 누락 시.
4. 이용자가 1회 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여 추심에 납부에 의지를 보이지 않을 때
5. 다만, 이용자 등은 개인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이용 전, 후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 해지 할 수 있다.

제8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 및 면책)

- ① 서비스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의 및 과실에 대한 배상부분은 본 재가기관에 가입되어 있는 배상보험(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계약내역에 의한다.
- ② 목욕 전 의료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목욕 담당자 및 보호자는 의사 또는 간호사의 판단 후 목욕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소견을 받아야만 목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단 이용자 등에 요청으로 목욕서비스 실시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에 관해서는 목욕 담당자는 면책하며, 그 사고에 관하여 이용자 등에 책임이 있다.)
- ③ 목욕 담당자는 낙상예방지침에 따라 행동하며,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상황 대응지침을 숙지하여 빠르게 대처한다.(낙상예방지침, 응급상황대응지침)
- ④ 대상자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목욕 담당자는 보건지도 및 권고사항을 이용자 등은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한다.
- ⑤ 목욕 개시 후, 종료 전까지 목욕 진행 중 목욕 담당자등에 고의, 과실에 의한 사고에 한하여, 책임을 부담하며, 그 외에는 면책한다.

제9조(방문목욕급여 제공기준)

- ① 방문목욕급여는 요양보호사 2인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되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차량을 이용하는 방문목욕급여는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차량 내에서 전적으로 목욕을 제공(차량내 목욕)하거나, 목욕차량의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가정내 목욕)한다.
 - 가.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 나.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2.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급여는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가정 내 욕조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제공하거나, 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목욕실이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대중목욕탕에서 제공한다.
- ② 방문목욕급여에는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 ③ 방문목욕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된 차량이어야 한다.

제10조(서비스 제공내용)

① 서비스실시

1.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기관의 실무 담당자는 서비스 제공일정을 확정하여 목욕 이용자에게 목욕 전일까지 통보하며, 대상자에 욕구에 의하여 특정 일자에 서비스를 원할 경우 최대한 반영한다.
2. 목욕 서비스는 2인 이상 1급 요양보호사가 진행하며, 목욕 전 건강상태를 확인, 목욕으로 인하여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인수자에 동의하여 목욕진행을 보류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병원진료 등에 의하여 의료진에 의하여 목욕을 권장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목욕 담당자는 이용자의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도록 창문이나 목욕커튼의 올바른 사용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여야 하며, 사생활 보호지침 비치에 따라 수행한다.
4. 목욕 담당자는 성실한 자세로 이용자의 목욕서비스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이용설비

방문목욕서비스는 본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탑형 목욕차량을 이용하며, 당사자와 협의 하에 목

욕차량 이용하지 아니하고 가정 내에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할 수 할 수 있다.

③ 정보 및 직접 제공 할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당사자 동의 후 진행되어야 하며,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 시설서비스

나. 지역사회 복지기관에서 시행되는 서비스

다. 관공서 등에서 시행되는 사회복지서비스

라. 기업체 및 민간단체에서 시행되는 사회복지서비스

마. 기타 사회복지사가 대상자의 권익과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회복지서비스

④ 담당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준하여 대상자의 권익과 건강을 최대한 보호 할 수 있는 서비스 정보를 제공한다.

⑤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및 직원에 고충에 대하여 고충처리지침에 따라,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 관리한다.

⑥ 담당직원의 변동 시 이용자에 대한 정보는 담당자 문서파일과 이용자 개인파일에 기록하여 변동으로 인한 정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제11조(이용자 등의 의무 및 권리)

① 이용자 등의 의무

1. 이용자 등은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목욕 담당자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이용자 등은 목욕서비스 전 본인(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이용자 등 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② 이용자의 권리

1. 이용자 등은 방문 목욕 서비스 이용내역을 열람을 청구 할 수 있다.

2. 이용자 등은 목욕 서비스 절차 및 과정 등을 목욕 담당자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단, 목욕 담당자 목욕서비스가 건강을 저해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 등에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